**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(공고)**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우리 회사는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 22기 정기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래 -

1. 개최 일시 : 2019년 3월 29일(금) 오전 09:00
2. 개최 장소 :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로 185-44 본사 B동 1층 회의실
3.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: 2018년 12월 31일
4. 명의개서 정지 기간 : 2019년 1 월 1일 ~ 2019년 1월 7일
5. 회의 목적 사항
6. 보고 안건
7. 제 22기(2018 사업년도) 영업보고
8. 제 22기(2018 사업년도) 감사보고
9. 2019사업년도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10. 제 22기(2018 사업년도)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
11. 부의 안건
12. 제 1호 의안 : 2018사업년도(2018.1.1~2018.12.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
13. 제 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(별첨 :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)
14. 제 3호 의안

* 제 3-1 호 의안 : 사내이사 김상기 재임의 건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성명 | 생년월일 | 임기 | 주요경력 | 추천인 | 최대주주와의 관계 | 최근 3년간 거래내역 |
| 김상기 | 1961.3.25 | 3년 | 현) ㈜감마누 대표이사  국방과연구소 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(초고주파/안테나) | 이사회 |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|  |

* 제 3-2 호 의안 : 사내이사 위청드어 선임의 건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성명 | 생년월일 | 임기 | 주요경력 | 추천인 | 최대주주와의 관계 | 최근 3년간 거래내역 |
| 위청드어 | 1981.1.18 | 3년 | 현) 에스엠브이홀딩스 대표이사  현) ㈜덕은 (금룡호텔) 대표이사  현) ㈜에스에듀 (루트호텔) 대표이사  현) ㈜ 덕림제주샹그릴라 호텔 사장 | 이사회 |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|  |

* 제 3-3 호 의안 : 사내이사 진시앙위 선임의 건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성명 | 생년월일 | 임기 | 주요경력 | 추천인 | 최대주주와의 관계 | 최근 3년간 거래내역 |
| 진시앙위 | 1976.7.5 | 3년 | 현) ㈜천계국제여행사 외 6개 종속여행사 이사 | 이사회 |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|  |

1. 제 4호 의안 : 사외이사 성종진 선임의 건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성명 | 생년월일 | 임기 | 주요경력 | 추천인 | 최대주주와의 관계 | 최근 3년간 거래내역 |
| 성종진 | 1955.3.22 | 3년 | ㈜리더스항공 사내이사(현재)  前) ㈜메디콘트래블 대표이사  前) ㈜신진여행사 대표이사 | 이사회 | - |  |

1. 제 5호 의안 : 감사 김재현 선임의 건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성명 | 생년월일 | 임기 | 주요경력 | 추천인 | 최대주주와의 관계 | 최근 3년간 거래내역 |
| 김재현 | 1960.1.9. | 3년 | 현) (유)선에셋 고문  전)  미래창투 상임고문  ㈜프론티어 건설 대표이사  ㈜다한개발 대표이사  ㈜범진산업개발 대표이사 | 이사회 | - | - |

1. 제6호 의안 : 2019사업년도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
2. 제7호 의안 : 2019사업년도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

6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.

2019년 3월 14일

주식회사 감마누

대표이사 김 상 기 (직인생략)

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장 허 인

**정관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조문** | **변경 전** | **변경 후** | **비고** |
| 제2조 목적 |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   1. 전자 통신분야 제조 및 서비스업 2. 종합무역업 3. 소프트웨어 개발, 제조업 4. 전자제품개발, 제조, 도.소매업 5. 의료기기개발,제조 및 서비스, 도소매업 6. 헬스케어장비개발,제조및서비스,도소매업 7. 계측장비개발,제조및서비스,도소매업 8. 막(膜) 개발, 제조 및 서비스, 도소매업 9. 전자상거래업 10. **위 각호와 관련된 수출입업** 11. **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** 12. 데이터수집/분석/판매 13. 플랫폼운영/통신판매 14. 국내/국외여행 15. 항공기/크루즈/관광버스운송 16. 전세항공기/전세크루즈/전세관광버스운영 17. **관광숙박** 18. **관광객이용시설** 19. **음식점** 20. **카지노** 21. **해외카지노** 22. 스포츠/위락시설운영 23. **프랜차이즈** 24. **면세점운영** 25. **보세상품판매** 26. **관광기념품 / 토산품판매** 27. 화장품제조/판매 28. 식음료제조/판매 29. 건강기능식품제조/판매 30. 농수산물판매 31. 해외부동산투자/개발 32. 부동산판매 33. **부동산임대** 34.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|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   1. 전자 통신분야 제조 및 서비스업 2. 종합무역업 3. 소프트웨어 개발, 제조업 4. 전자제품개발, 제조, 도.소매업 5. 의료기기개발,제조 및 서비스, 도소매업 6. 헬스케어장비개발,제조및서비스,도소매업 7. 계측장비개발,제조및서비스,도소매업 8. 막(膜) 개발, 제조 및 서비스, 도소매업 9. **전력저장용 축전지와 전력변환 및 관리 관련시스템과 소재개발, 제조, 가공 판매, 임대업 및 서비스업** 10. **전력저장용 전지 수입 및 판매업** 11. **지능형 전력망(스마트 그리드) 설비의 제조·설비 판매 및 관련 사업** 12. 전자상거래업 13. 데이터수집/분석/판매 14. 플랫폼운영/통신판매 15. 국내/국외여행 16. 항공기/크루즈/관광버스운송 17. 전세항공기/전세크루즈/전세관광버스운영 18. **항공권판매대행업 / 호텔예약업 / 여권대행업 / 비자대행업** 19. **의료관광알선 및 의료관광업/ 외국인환자유치업** 20. **관광숙박/관광객이용시설** 21. **음식점/프랜차이즈** 22. **국내카지노/해외카지노** 23. 스포츠/위락시설운영 24. **면세점운영 및 외국인면세 판매장업(사후면세점)** 25. **보세상품판매/관광기념품판매/토산품판매** 26. 화장품제조 / 판매 27. 식음료제조/판매 28. 건강기능식품제조/판매 29. 농수산물판매 30. 해외부동산투자/개발 31. **부동산판매/부동산임대** 32. **일반여행업/해외여행업/여행알선업** 33. **인바운드플랫폼사업** 34. **자문 및 컨설팅용역/기타 용역서비스 제공** 35. **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통신판매업** 36. **위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 및 무역업/수출입업** 37. **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** |  |
| 제24조  의장 |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.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| 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.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 **②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복수의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의장이 주주총회의 의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한다.** |  |
| 제32조  이사와 감사의 원수 |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로 하고, 감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로 한다. | ①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로 하고, **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**  **②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**  ③ 감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로 한다. |  |
| 제37조의1  의장 |  | ①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 **②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복수의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호선으로 의하여 정하거나, 수인으로 할 수 있다.** |  |
| 제38조  이사회의 결의방법 |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| **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**  **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․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**  **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** |  |
| 제40조  대표이사 등의 선임 | ① 당 회사는 대표이사 1인과 필요한 경우에 상근이사 각 약간명을 둔다.  ② 대표이사, 상근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  ③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한다. | ① 당 회사는 대표이사 1인과 필요한 경우에 상근이사 각 약간명을 둔다.  **② 이사회는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영역에 따라 필요시 2인 이상의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.**  ③ 대표이사, 상근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  ④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한다. |  |
| 제41조  이사의 직무 |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상근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.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상근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| ①대표이사는 **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**  **②상근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.**  ③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상근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. |  |
| 제43조의1  이사.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|  | **①당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**  **②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(경업금지),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상법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** | (신설) |
| 제46조 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| ① 대표이사(사장)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 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③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  ④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 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상법 제447조의 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, 감사 전원의 동의가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.  ⑦ 제6항에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| **①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**  **1. 대차대조표**  **2. 손익계산서**  **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**  **②당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**  **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**  **④제1항에 불구하고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**  **1.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**  **2.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**  **⑤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**  **⑥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**  **⑦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** |  |
| 제46조의1  외부감사인의 선임 |  | **당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** | (신설) |